

-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
의회운영위원회 매뉴얼북

2014. 7.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머 / 리 / 말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협의,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협의·조정 등 의회운영의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의회의 중심으로써, 의회사무처를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과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또한, 의안처리·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지난 6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주요 활동실적을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의회사무처 직원, 관심 있는 의원 및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목 차 ●●●

제1장.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

- I.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9
 -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9
 -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 9
- II.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10
 - 1. 회기 결정 10
 - 2. 의사일정 협의 10
 - 3.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10
 - 4.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12
- III.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13
 - 1. 의회사무처 개요 13
 - 2. 예산안·결산안 심사 15
 - 3. 행정사무감사 15
- IV.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6
 - 1. 조례안 심사 16
 - 2. 규칙안 심사 16

제2장.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I. 위 원 19
 - 1. 선임 19
 - 2. 임기 19
- II. 위원장 20
 - 1. 선출방법 20
 - 2. 임기 20
 - 3. 사임 20
 - 4. 직무 및 권한 20

Ⅲ. 부위원장	22
1. 선임	22
2. 임기 및 사임	22
3. 직무	22
Ⅳ. 전문위원 및 공무원	23
1. 근거	23
2. 조직	23
3. 전문위원의 임무	23
4.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명단	23

제3장.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운영

I. 위원회 회의	27
1. 회의의 일반원칙	27
2. 회의의 종류	29
II. 의안 심사	31
1. 의안의 의의	31
2. 의안 관련 용어 정의	31
3. 일반적인 심사 절차	33
III. 위원회 운영	35
1. 의석 배치	35
2. 개회·정회·산회·유회	36
3. 위원회 의상 일정	37
4. 회의의 공개·비공개	37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38
6. 위원회 발언제도	38
7. 질의·토론	39
8. 표결	39
9. 위원회에서 동의	40
10. 회의록 자구정정 등	41
11. 의사봉 사용	42

IV. 행정사무감사	43
1. 의의 및 성격	43
2. 시기 및 장소	44
3. 대상기관	44
4. 실시절차	44
V. 특별위원회	48
1. 구성취지	48
2. 구성방법	48
3. 명칭	48
4. 소관 및 기능	48
5. 위원정수	49
6. 활동기간	49
7. 제6대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현황	49

제4장. 6대 의회운영위원회 주요활동실적

I. 의안 접수 및 처리	53
1. 의안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3
2. 의안별 처리결과	55
II. 의사일정	59
III. 행정사무감사 실시	66
IV.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67

부록 ①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	71
② 운영전문위원실 주요업무 보고	73

제 1 장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

- I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 II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III .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IV .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I.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회기 결정
- 의사일정협의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등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소관부서 : 3담당관, 6수석전문위원, 1실 10담당
 -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교육전문위원실
- 예산안 및 결산심사
-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심사
- 규칙안 심사

II.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1. 회기 결정
2. 의사일정 협의
3.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4.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1. 회기 결정

가. 회기의 의의

- 회기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함
-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몇 일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하여야 함

나. 회기 결정

-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그 다음날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의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됨
-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 제의에 의하여 제안되게 됨 이에 대해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로 결정함

다. 회기 개시 및 폐회

- 회기는 집회일부터 개시되며, 집회일에 회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집회당일부터 시작되어 진행됨

라. 회기의 연장 및 단축

- 회기는 법정 회기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회의규칙 13①) 또는 단축할 수 있음(회의규칙 13④)
- 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됨
- 회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는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를 단축할 수 있음

2.

의사일정 협의

가. 의사일정의 의의

- 의사일정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 등을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를 말함
- 당일의 의사일정과 회기전체의 의사일정으로 구분됨

나. 의사일정 작성 및 협의

-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면,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함(회의규칙 17②)
- 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협의의 건」으로 상정 및 논의하는데 수정도 가능함
- 의장은 수정된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함(회의규칙 17②)

다. 의사일정 변경, 안건추가 및 순서변경

-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또는 제적의원 1/5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음(회의규칙 18)
- 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은 위원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로 처리함

3.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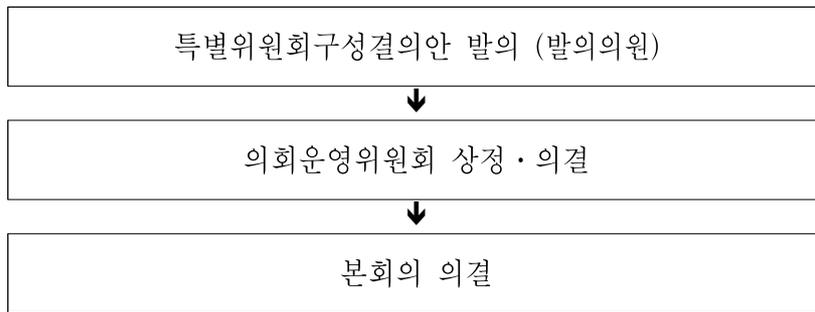
가. 특별위원회 구성 근거

-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지방자치법 56②)

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 절차

-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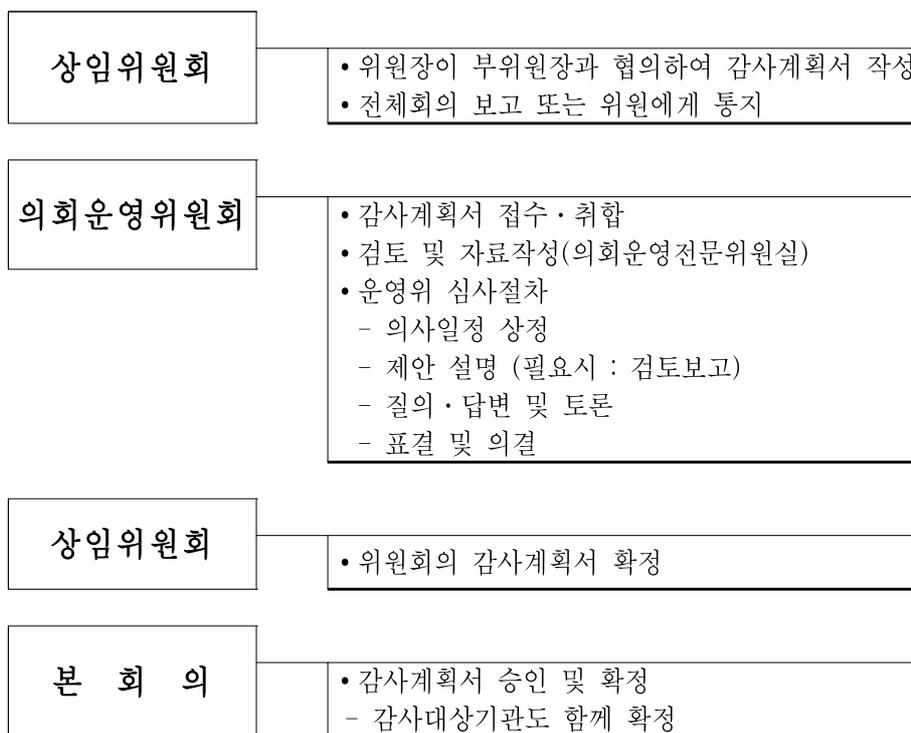
< 특별위원회 구성절차 >



4.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5②)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게 됨

<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조정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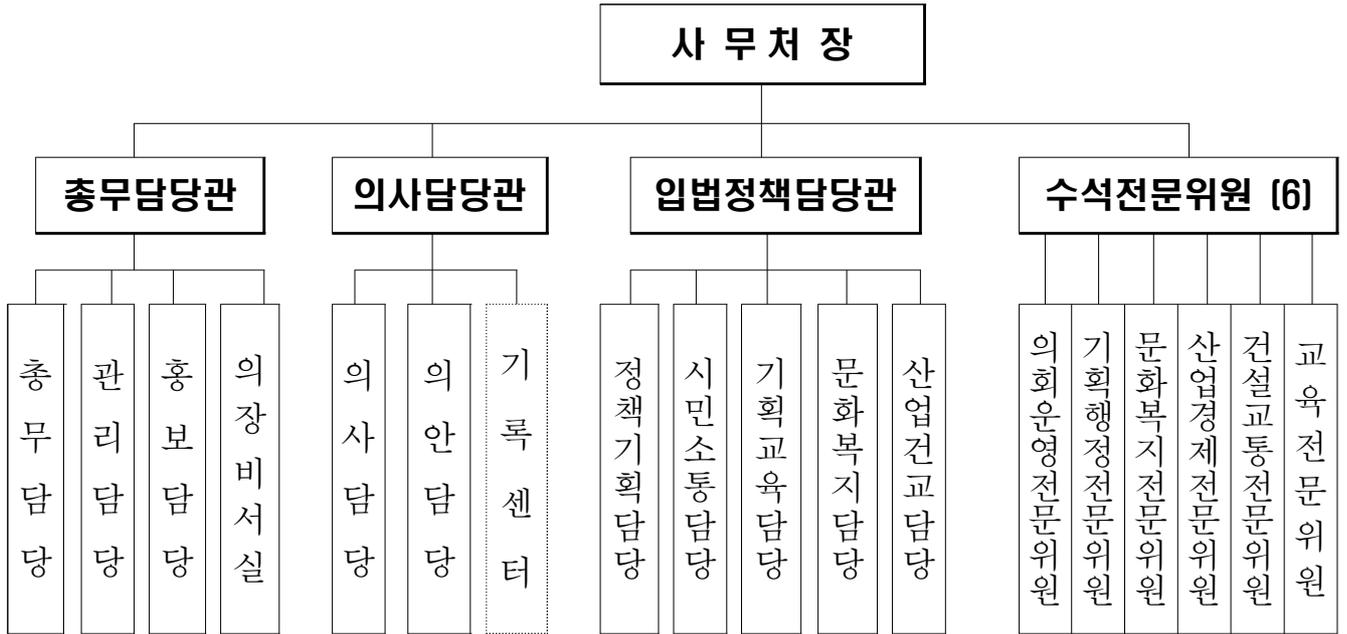
-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제도의 취지 -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과도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일정을 협의 조정할 필요에 의해 운영됨

Ⅲ.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1. 의회사무처 개요

가. 기 구 : 3담당관, 6수석 전문위원, 1실 10담당



나. 인 력 : 정·현원 : 105/105명 (교육직 9명 포함)

(‘14. 6월 정원 / 현원)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계	105/105	1/1	9/9	17/17	31/33	40/39	5/4	2/2	
총 무	32	1	1	4	8	14	4		
의 사	16		1	2	3	8		2	
입 법	17		1	5	7	4			
	1(교육직)				1				
전 문	31		5	5	11	10			
	8(교육직)		1	1	3	3			

※ 상용직 10명 미포함

다. 간부공무원 현황 (2014. 7. 1 현재)

직 위 (소관부서)	성 명	주 요 사 무	비 고
의회사무처장	 이 상 익	▶ 의회사무처 총괄	
총무담당관	 김 희 식	▶ 의회사무처의 인사, 조직, 예산에 관한 사항 ▶ 의회 의전 및 행사 지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물 관리,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집행	
의사담당관	 김 복 기	▶ 의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전자회의시스템 운용 및 유지 관리 ▶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정아카데미 운영 ▶ 의안·청원의 접수 및 회부, 의원요구자료 처리	
입법정책담당관	 정 관 희	▶ 의원발의 조례 입법지원 ▶ 자치법규 등의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 의정 주요현안의 조사·연구 및 발전방향 제시 등 정책연구 ▶ 주요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지원	
의 회 운 영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의안·청원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 검토	
기 획 행 정 수석전문위원	 왕 동 향	▶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의안·청원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 검토	
문 화 복 지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의안·청원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 검토	
산 업 경 제 수석전문위원	 구 남 회	▶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의안·청원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 검토	
건 설 교 통 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	▶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의안·청원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 검토	
교 육 수석전문위원	 강 창 학	▶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의안·청원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 검토	

3. 예산안 · 결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예산안 · 결산심사(회의규칙 68①)

< 예산안 · 결산 제출 및 심사시기 >

구 분	의회제출시기	예비심사기한	심 사 절 차
예산안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지방자치법 127)	-의장은 심사기한을 지정할 수 있음. (회의규칙 68③)	①위원회 회부 ②의사일정 상정 ③제안설명 (의회사무처장)
결 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함 (지방자치법 134)	-의장은 심사기한을 지정할 수 있음. (회의규칙 72③)	④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⑤질의 · 답변 ⑥토론 ⑦의결

4. 행정사무감사

-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4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2①)

IV.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 조례안 심사

-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검토기간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회의규칙 22조의3)
- 조례안의 상정 전까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
- 조례안 심사절차
①위원회 회부 ⇒ ②의사일정 상정 ⇒ ③제안설명 ⇒ ④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⑤질의·답변 ⇒ ⑥토론 ⇒ ⑦사무처장(담당관) 의견 청취 ⇒ ⑧표결 및 의결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

-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규칙안 심사

- 의회 관련 규칙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의결로 제·개정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 >

-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2 장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I . 위 원

II . 위원장

III . 부위원장

IV . 전문위원 및 위원회 공무원

I. 위 원

1. 선임

가. 선임 및 개선

-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함(운영에 관한 조례 31)
-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임위원으로써 의장 추천 1인을 제외한 10인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임

나. 선임시기

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되는 위원의 경우

☞ 7대 의회 최초 임시회 제2차 본회의(7. 2(수) 14:00) 선임 예정

②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선임되는 위원의 경우

☞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회기 중에 선임하고 있음

2. 임기

가. 원칙

- 2년.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운영에 관한 조례 28①)

나. 보임·개선된 위원의 임기

-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운영에 관한 조례 28③)

다. 정수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 이내임(운영에 관한 조례 25)

II. 위원장

1. 선출방법

가. 선거

-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로 본회의에서 선출함
(운영에 관한 조례 29)

나. 선거시기

- 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경우
 - ☞ 7대 의회 최초 임시회 제2차 본회의(7. 2(수) 14:00) 선출 예정
- ②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선출되는 위원장의 경우
 - ☞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회기 중에 선출하고 있음

2. 임기

- 의회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2년임
(운영에 관한 조례 29③)

3. 사임

- 상임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동의로,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

4. 직무 및 권한

-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을 가짐
-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개회시간 결정, 의사일정 작성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함(운영에 관한 조례 32)

< 위원회 대표권 >

-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에서 심사경과·결과를 보고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
-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의 제출
- 자치단체장, 교육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공청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보고
-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요청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
- 집행부·기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

< 의사정리권 >

-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함
-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부위원장을 지정
- 위원회를 개최
- 개회·산회와 회의중지 선포
-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연장
-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조정
- 위원회 비공개회의록·기타 비밀참고자료 열람 허용
- 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관계공무원 발언 허가

< 질서유지권 >

- 회의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경고·제지·발언금지 및 퇴장명령
-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
- 방청권 발행, 방청인을 퇴장명령
-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
-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위원회 사무 감독권 >

- 위원회 공무원의 사무를 지휘·감독
- 위원회의 문서관리 및 발간·배포

Ⅲ. 부위원장

1. 선임

-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인을 둠(운영에 관한 조례 33①)
-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운영에 관한 조례 33②)
- 선임방법은 구두호선, 즉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해 「이의유무」를 묻고 가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함
- 그러나 3명 이상이 추천되는 경우에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 등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임기 및 사임

-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와 같이 2년임
- 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하게 되면 당연히 부위원장의 지위도 상실됨

3. 직무

-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여 위원회의 개최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결정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함(운영에 관한 조례 33③)
-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함(운영에 관한 조례 33③)

IV. 전문위원 및 위원회 공무원

1. 근거

-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4①)

2. 조직

- 수석전문위원(4급), 전문위원(5급)
- 사무보조 직원(6~9급)

3. 전문위원의 임무

가. 의사 진행 보좌

- 전문위원 역할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진행 보좌

나.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검토보고

-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안건심사와 관련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다. 행정업무 총괄

-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의사진행보좌, 위원회의 일반행정업무 등을 총괄

4.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명단 (2014. 7. 1 현재)

직위(직급)	성명	사진	업무
수석전문위원 (별정4급)	임조순		○ 운영전문위원실 업무 총괄
전문위원 (행정5급)	전병호		○ 운영전문위원실 업무 관리 ○ 위원회 회의진행
행정6급	전창성		○ 예산·결산 종합분석 및 검토(시청) ○ 시나리오 작성(예결위) ○ 예결위원 요구자료 처리
행정6급	최정화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 시나리오 작성 (운영·윤리·특위) ○ 특별위원회 운영
행정7급	김태희		○ 예산·결산 종합분석 및 검토(교육청) ○ 검토·심사보고서 작성(시청·교육청) ○ 예결위원 요구자료 처리
행정7급	정종영		○ 운영위원회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업무 ○ 특별위원회 운영
사무운영6급	임세옥		○ 운영전문위원실 사무 ○ 운영전문위원실 예산 집행 ○ 운영(예결)위원회 회의실 관리
공무직	최민경		○ 운영위원장실 사무 보조
대체인력	이연화		○ 특별위원장실 사무 보조

제 3 장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운영



- I . 위원회 회의
- II . 의안 심사
- III . 위원회 운영
- IV . 행정사무감사
- V . 특별위원회

I. 위원회 회의

1. 회의의 일반원칙

가. 발언 자유의 원칙

-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임
- 이러한 과정은 의원들의 발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함
-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자치법 84),
 - ②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 ③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그 발언을 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회의규칙 35)

나. 회의공개원칙

-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자치법 65)
- 회의 공개의 내용에는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포」 까지를 포함함
-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또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회의규칙 91)

다.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함(자치법 67)
-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어떤 심의 절차상에 있던 간에 모두 폐기됨(자치법 67)

라.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함(자치법 68)
- 여기서 부결의 개념에는 폐기(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

< 일사부재의의 원칙 적용범위 >

- | | |
|--------------|--|
| ① 동일한 회기 | : 회기가 다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 미적용 |
| ② 동일한 내용의 안건 | : 같은 회기, 동일 명칭이라도 내용이 상이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 미적용 |
| ③ 동일한 회의체 | : 위원회와 본회의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함 |

마. 다수결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임. 이는 각 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며 의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하며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여야 하며, 소수는 최종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함

바. 정족수의 원칙

-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함
- 따라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음

< 정족수원칙의 유형 >

- | | |
|---------|--|
| ① 의사정족수 | : 위원회를 개의(개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위원수 (재적의원 1/3이상) |
| ② 의결정족수 | : 안건을 의결(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③ 발의정족수 | : 의안이나 동의를 발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일반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

사. 1일1차 회의의 원칙

- 1일에 1차 회의 즉,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의를 오후 12시를 넘어서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오후 12시가 되기 바로 전에 그날 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기다린 후 그 다음날 0시 01분에 새로운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함

2. 회의의 종류

가. 전체회의

-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건을 다루는 통상적인 회의로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회의규정에 따라 운영됨

나. 소위원회

- 위원회에서 안건을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운영에 관한 조례 34)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는데 한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소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명칭은 일반적으로 담당할 안건의 명칭에 따라 정해짐

다. 공청회

- 공청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말함
-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는데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토론이나 표결을 하지 못함

라. 의원간담회

- 의회운영에 관한 간담회는 의원 간에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하고 사전에 조율함
- 자치법령 및 회의규칙상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간담회결과도 법적기속력이 없음

II. 의안 심사

1. 의안의 의의

-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고, 이 안건 중에서 「의원」 및 「단체장(교육감)」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함
- 일반적으로 의안을 유형별로 보면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의안 관련 용어 정의

가. 안건 · 의안 · 의제

- 안건 : 의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하며, 심의 · 의결을 요하는 안건과 그렇지 아니한 안건으로 구분됨
- 의안 : 모든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함
- 의제 : 의결여부를 떠나서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대상 안건의 제목을 말함

나. 발의 · 제출 · 제안

- 이들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실무관행상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경우 ‘발의’, 집행부가 의안을 내는 경우 ‘제출’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함
- 양자를 모두 지칭하거나 위원회가 의안을 내는 경우 ‘제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다. 원안 · 수정안 · 대안

- 원안 : 의회에 최초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 수정안 : 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여 추가 · 삭제 · 변경 등을 행하는 것을 수정이라 하며, 그 수정내용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함

- 대안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안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제출 대안과 의원발의 대안으로 나눌 수 있음

라. 동의

- 의원 또는 위원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안을 갖추는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회의장에서 직접 발의하는 것을 말함
-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회의규칙 25)

마. 철회

-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의자가 2인 이상이면 모든 발의자가 찬성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 중 일부 의원의 명의로 철회를 요구할 수 없음(회의규칙 27)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회의규칙 27)

바. 번안

- 위원회에서의 번안은 위원회가 이미 가결된 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하는 것을 말함
-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를 소속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음(회의규칙 28②)

3.

일반적인 심사절차

위원회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안건 중 조례안을 중심으로 살펴봄.
기타 안건도 이 절차에 준하여 심사함

가. 입법예고

-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시보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함 (회의규칙 22조의2)
 -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생략 가능

나. 상 정

- 「의사일정을 상정」 한다는 의미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함
- 의원발의 또는 시장(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 (회의규칙 22조의3)
 -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다. 제안설명

- 조례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함
- 시장제출 조례안은 실·국장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이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 의원이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의원이나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음

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필요성, 효과, 문제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여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일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임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임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발의자(제출자)가 하나, 질의의 내용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 적절한 답변자가 답변할 수도 있음

바. 찬반토론

- 토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종결된 후 의원이 자기의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른 의원을 자기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언임
- 따라서 토론은 찬성·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함

사. 표결(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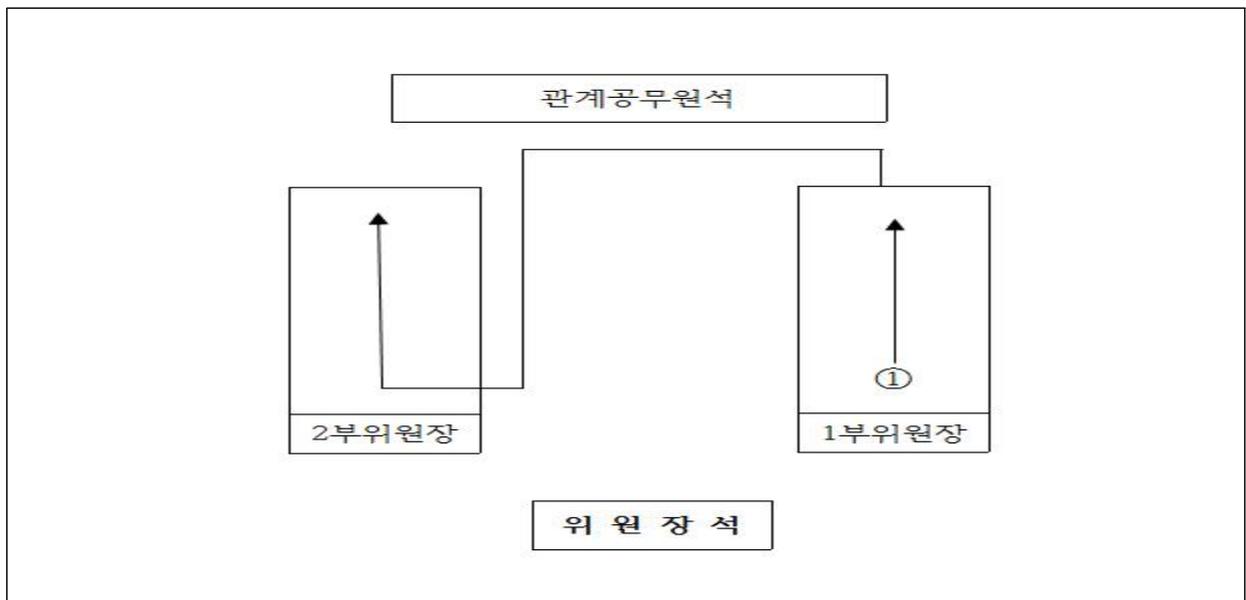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로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임
- 표결의 종류에는
① 이의유무, ② 거수표결, ③ 기립표결, ④ 무기명투표, ⑤ 기명투표 등이 있음

Ⅲ. 위원회 운영

1. 의석 배치

-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는 데는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 배정함
- 「위원 성명순서」에 의해서 부위원장석을 제외한 우측 열 앞 의석부터 배정한 후, 좌측 열의 앞 의석부터 차례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의회운영위원회 의석배정 >



2.

개회 · 정회 · 산회 · 유회

가. 개 회

- 본회의는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어야 활동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회기중」 이거나 「폐회중」 이거나 항상 개최할 수 있음(자치법 61)
- 위원회의 개회는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1/3이상의 개최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음(자치법 61)

나. 정 회

- 일단 시작된 본 위원회가 산회되기 전까지 회의중에 필요에 의하여 회의를 잠시 쉬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회를 함
 -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부여
 - 휴식 및 식사시간 확보
 - 의사 또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의사일정 조정 및 의견 조율 등

다. 산 회

- 산회는 당일 시작된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회를 선포함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심의·의결이 모두 끝났을 때
 - 필요한 경우나 회의장 소란으로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 회의 중에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

라. 유회

- 이미 의사일정이 결정되어 공지된 위원회가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날 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음(회의규칙 15②)
- 유회의 결정은 의사정리권을 가진 위원장이 판단하며,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따라 한번 유회가 선포되면 그날은 회의를 열 수 없음

3. **위원회 의사일정**

가. 의사일정 작성

- 위원회의 「전체의사일정」은 본회의의 「전체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게 됨
-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 또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지정한 기간에 활동하게 되는데, 시급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의 개의 시간 전 또는 산회 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나. 의사일정 변경

- 의사일정변경은 위원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데, 의사일정 변경 대상은 당일의사일정이며, 전체의사일정은 아님
- 전체의사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로 작성한 하나의 회의 계획표이므로 이의가 있는 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제기하고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 부위원장과 재협의하여 재작성함

4. **회의의 공개 · 비공개**

가. 회의의 원칙

-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나. 비공개 회의

- 비공개의 회의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회의규칙 91)

다. 비공개 회의록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아니함

라. 비공개 회의의 촬영 및 중계

- 비공개 회의는 촬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의사중계나 외부로 연결된 스피커도 차단해야 함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가. 의 의

- 정족수라 함은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의 개최 또는 의결 등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의 수를 의미함
- 정족수에는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위원수인 의사정족수와 안건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위원수인 의결정족수가 있음

나. 의사정족수

-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함(자치법 63)

다.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결정족수라고 함
-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위원회 발언제도

가. 원 칙

- 위원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동일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음(회의규칙 59①)
- 다만, 위원회 의결로 발언자수 및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발언순서

- 위원의 발언순서는 본회의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발언신청 순서와 의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결정함
-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자유스럽게 의석에서 발언을 신청하고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토론은 반대토론을 우선 발언하게 하되 찬성·반대의 순으로 교대하여 허가함

다.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의원

- 의장
- 위원
-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
- 전문위원

7. 질의·토론

가. 질 의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임
- 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 또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회의규칙 59②)

나. 토 론

- 심사중인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발언을 말함
- 토론은 단순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기 위한 발언임
- 토론자가 전부 발언을 마치면 위원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곧바로 표결로 들어가게 됨

8. 표 결

가. 의 의

-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심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임
- 이 표결 결과에 따라 안건에 대한 가결·부결이 결정되게 됨

나. 종 류

- 이의유무
- 거수표결
- 기립표결
- 무기명투표
- 기명투표

다. 방 법

-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거수 또는 기립표결로 표결함
- 회의규칙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 제의 또는 위원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라. 표결순서

- 안건의 표결은 1개 안건씩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개의 안건을 일괄 하여 상정·심의한 경우라도 개개 안건 하나씩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표결해 나가는 것이 원칙임
- 1개의 안건에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 ①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 ② 위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 ③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하고,
 - ④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

9.

위원회에서의 동의

가. 의 의

- 동의는 주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이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됨
- 동의는 원칙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안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됨

나. 발의요건

- 일반적으로 동의란
 - ① 안을 갖출 필요 없이 구두로 발의하고,
 - ②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 ③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이며
 - ④ 그 회의체의 구성원인 의원이 발의하는 것임

다. 동의형식

-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함
- 회의의 절차 또는 간단한 내용의 것은 구두로 동의하고, 일정한 토의를 요하거나 안을 갖출 필요가 있는 사안은 서면으로 함이 타당함

라. 동의의 철회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동의를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서 발의 의원이 찬성자의 동의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음(회의규칙 27①)
-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발의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하며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심의중이거나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있어야 철회가 가능함

10. 회의록 자구정정 등

가. 위원회회의록의 의의

-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나. 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날인

-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함(회의규칙 66①)
 - ①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 ② 의사일정
 - ③ 출석위원의 성명
 - ④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 ⑤ 출석한 공무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 ⑥ 심사안건명
 - ⑦ 의사
 - ⑧ 표결수
 - ⑨ 위원장의 보고
 - ⑩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 ⑪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함(회의규칙 66③)

다.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발언한 의원이 회의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회의규칙 52①)
-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결정함(회의규칙 52②)
-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함(회의규칙 52③)

라. 회의록의 배부와 반포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함(회의규칙 53①)
-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회의규칙 53②)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됨(회의규칙 53④)

11. 의사봉 사용

- 지방의회 등 회의체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선포시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음
- 의사봉을 3타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의회의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의사봉을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의사봉을 3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임

IV. 행정사무감사

1. 의의 및 성격

가. 의의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음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감사의 주체 및 성격

-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주체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인데, 본회의에서도 실시할 수 있음
-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되는 활동이므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거나 회의차수를 붙이지 아니함
- 감사중에 감사계획서를 변경한다든가 감사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감사를 중단한 후 그 자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든가, 감사 종료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에서 결정함

< 회의와 행정사무감사·조사 비교 >

구 분	본회의 / 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성 격	회 의	활 동
준 비	의사일정	감사·조사계획서
주 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상임위, 감사·조사특위
원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족수의 원칙 • 1일1차회의 원칙 등 회의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원칙 미적용 • 감사·조사계획서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실시
진행방법	회의진행(회의규칙 적용)	회의규칙을 적용하는 회의가 아니나, 편의상 회의형식으로 진행
회의록작성	속기에 의한 회의록 작성	속기에 의한 감사회의록 작성

2. 시기 및 장소

가. 시 기

-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에서 실시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②)

나. 장 소

-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

3. 대상기관

- 시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시 및 교육청
- 시 소속 행정기관
-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함)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만 실시)

4. 실시절차

가. 준비단계

① 감사계획서의 작성 및 의결

-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②)
-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② 감사계획서 협의

-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게 됨(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②)
- 협의절차를 보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고, 그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위원회에서는 「○○○○년도 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함

③ 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및 통보

- 감사계획서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등을 기재함(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②,③)
-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에서 선정·결정할 수 있으나 특정기관을 감사할 경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의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⑤)

④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

- 감사위원회는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자치법 41④)(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
-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은 의장을 통하여 해당일 3일 전까지 도달되어야 함(자치령 43)

나. 실시단계

①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아니고 활동이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은 개회를 선포하지 않고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한 후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함

② 증인선서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먼저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자치령 43⑤)
- 선서는 일반적으로 당일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가 구두로 선서를 하고, 선서자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서에 각자 서명하고, 이를 모아서 선서 대표자 또는 선서한 다른 간부공무원이 위원장에게 제출함

③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보고

-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은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하고 그 기관의 간부를 소개함
- 인사가 끝난 후 바로 피감사기관의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현황 또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고함

④ 질의·답변 (증인 신문 및 증언 청취)

- 답변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답변도 허용할 수 있음
- 감사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질의·답변」 형식을 취하며, 감사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사항은 감사장에서 요구하기도 함

⑤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가 종료하게 되면 위원장은 간단하게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하게 됨

다. 결과 처리단계

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

-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
- 보고서는 감사를 보좌한 사무보조직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됨

②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채택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채택)하게 됨

③ 본회의에서의 감사결과 채택 및 이송

-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의장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이나 피감사기관의 기관장에게 이송함

④ 시장의 처리결과 보고 및 접수

- 감사결과를 이송 받은 시장은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6③)

V. 특별위원회

1. 구성취지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함 (자치법 56②)
- 즉, 수 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함
-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개의 특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의원 1인이 2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도 있음

2. 구성방법

- 운영위원회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함
- 조사특별위원회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이 가능함

3. 명칭

-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수는 일반적으로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의 명칭을 따라 정해지며, 결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됨
- 결의안은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의 형식으로 제출하나, 의결 과정에서 의원정수, 명칭 등의 수정은 가능함

4. 소관 및 기능

- 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 즉 업무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명시되게 됨
-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지만, 필요한 경우 유사한 안건을 의원동이나 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회부할 수 있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므로 그 권한은 부여받은 안건의 심사에 그치며 새로운 조례 등 의안을 특위가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5. 위원정수

-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의 내용에서 정해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명을 초과할 수 없음(운영에 관한 조례 30②)
- 일반적으로 기타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수와 유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한정된 기간에만 활동함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주문」에 활동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기간 만료 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7. 제6대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현황

특별위원회명	위원수	활동기간	비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	1 년	1~4기
윤리특별위원회	9명	1 년	1~4기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10명	‘10.10.19~12.06.18	20개월
지방재정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9명	‘10.10.29~11.10.28	12개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11명	‘10.12.16~11.09.15	9개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11명	‘10.12.23~11.12.22	12개월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11명	‘11.07.06~12.05.31	10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9명	‘12.07.06~13.03.31	9개월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7명	‘13.02.01~13.09.30	8개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13명	‘13.10.11~14.03.10	5개월

제 4 장 6대 의회운영위원회 주요활동실적



- I . 의안 접수 및 처리
- II . 의사일정
- III . 행정사무감사 실시
- IV .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I. 의안 접수 및 처리

1.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

가. 처리유형별

(단위 : 건)

회 기 별	상정	처리	처 리 내 용					비고
			가 결		부결	보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34	134	96	16	0	1	21	
제185회 임시회	8	8	6				2	
제187회 제1차정례회	5	5	3	2				
제188회 임시회	3	3	2				1	
제189회 제2차정례회	6	6	4	1			1	
제190회 임시회	3	3	2				1	
제191회 임시회	4	4	3	1				
제192회 임시회	2	2	2					
제193회 임시회	3	3	2				1	
제194회 제1차정례회	5	5	5					
제195회 임시회	5	5	2	3				
제196회 임시회	1	1	1					
제197회 제2차정례회	5	5	3	1			1	
제198회 임시회	2	2	1				1	
제199회 임시회	1	1	1					
제200회 임시회	7	7	6				1	
제201회 임시회	1	1	1					
제202회 제1차정례회	11	11	9	1			1	
제203회 임시회	9	9	5	1			3	
제204회 임시회	1	1	1					
제205회 제2차정례회	9	9	7				2	
제206회 임시회	4	4	2				2	
제207회 임시회	1	1	1					
제208회 임시회	12	12	10				2	
제209회 제1차정례회	6	6	3	2		1		
제210회 임시회	5	5	2	3				
제211회 임시회	2	2	1				1	
제212회 제2차정례회	7	7	6	1				
제213회 임시회	2	2	1				1	
제214회 임시회	1	1	1					
제215회 임시회	3	3	3					

나. 안건유형별

(단위 : 건)

구 분	계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규 칙 정 (안)	결 의 안 (건의안)	선거 선임	보 고 의 행 감
계	134	12	4	22	10	17	2	67
제185회 임시회	8			1		2	1	4
제187회 제1차정례회	5	1	1			1		2
제188회 임시회	3					1		2
제189회 제2차정례회	6	2				2		2
제190회 임시회	3			1				2
제191회 임시회	4			3				1
제192회 임시회	2			1				1
제193회 임시회	3							3
제194회 제1차정례회	5		1			3		1
제195회 임시회	5	1		1				3
제196회 임시회	1							1
제197회 제2차정례회	5	2		1				2
제198회 임시회	2							2
제199회 임시회	1							1
제200회 임시회	7			3	2			2
제201회 임시회	1							1
제202회 제1차정례회	11	1	1			3	1	5
제203회 임시회	9			2	2			5
제204회 임시회	1							1
제205회 제2차정례회	9	2				1		6
제206회 임시회	4			1				3
제207회 임시회	1							1
제208회 임시회	12	1		3	2	2		4
제209회 제1차정례회	6		1	2	1			2
제210회 임시회	5			1	1	1		2
제211회 임시회	2							2
제212회 제2차정례회	7	2		1	1			3
제213회 임시회	2							2
제214회 임시회	1							1
제215회 임시회	3			1	1	1		

2.

의안별 처리결과

가. 예산안 및 결산

□ 예산안

-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 수정가결
-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 수정가결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 수정가결

□ 결산안

-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 원안승인
-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 원안승인
-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 원안승인
-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 원안승인

나. 조례안

연번	의안명	처리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재병의원 발의)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조영홍의원 발의)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이재병의원 발의)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기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신현환의원 외 14인 발의)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9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1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1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용덕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1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재용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16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17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윤재상의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연번	의안명	처리결과	비고
18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용덕의원 외 8인 발의)	보류	
19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지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재용의원 외 9인 발의)	수정가결	
20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용덕의원 외 8인 발의)	수정가결	재상정
2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동수의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2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다. 규칙안

연번	의안명	처리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재상의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현환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재용의원 외 9인 발의)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용오의원 외 7인 발의)	수정가결	
9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라. 결의(건의)안

연번	의 안 명	처리결과	비 고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1기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1기
3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구·이재병의원 발의)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강병수의원 발의)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수영의원 발의)	원안가결	
6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범의원 발의)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2기
8	인천광역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2기
9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병철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10	LH공사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병철의원 발의)	수정가결	
1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3기
1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3기
13	경인 아라뱃길 사업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1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4기
1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4기
16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수영의원 외 14인 발의)	수정가결	
17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Ⅲ. 의사일정

회기별 (차수)	회의일자	부의안건	심사결과
제185회 (제1차)	2010.07.07	○ 간사선임의건	/
제185회 (제2차)	2010.07.09	○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협의건(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협의건(위원회안)	원안가결
		○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원안가결
		○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
제185회 (제3차)	2010.08.13	○ 제186회인천광역시의회(임사회) 운영계획안협의건	원안가결
제185회 (제4차)	2010.08.19	○ 제18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계획안협의건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협의건	위원회안
제187회 (제1차)	2010.09.02	○ 2009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	원안가결
		○ 2010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제187회 (제2차)	2010.10.11	○ 제188회인천광역시의회(임사회) 운영계획안협의건	수정가결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건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 위원회구성결의안(이한구·이재병의원발의)	원안가결
제188회 (제1차)	2010.10.20	○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 위원회구성결의안(강병수의원발의)	원안가결
		○ 의회사무처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제188회 (제2차)	2010.11.08	○ 제18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계획안협의건	원안가결
제189회 (제1차)	2010.11.29	○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정수영의원발의)	원안가결
		○ 2010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1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수정가결

회기별 (차수)	회의일자	부의안건	심사결과
제189회 (제2차)	2010.12.16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 2011년도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계획안	원안가결
제189회 (제3차)	2011.01.13	○ 제19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 협의건	원안가결
제190회 (제1차)	2011.01.21	○ 2011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원안가결
제190회 (제2차)	2011.02.28	○ 제19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운영계획안협의건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협의건(위원회안)	원안가결
제191회 (제1차)	2011.03.10	○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의원 발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의원 발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이재병의원 발의)	보 류
제191회 (제2차)	2011.03.16	○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이재병의원 발의)(계속)	수정가결
제191회 (제3차)	2011.04.04	○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192회 (제1차)	2011.04.12	○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기 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제192회 (제2차)	2011.05.03	○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193회 (제1차)	2011.05.16	○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	/
제193회 (제2차)	2011.06.02	○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193회 (제3차)	2011.06.13	○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변경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194회 (제1차)	2011.06.15	○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회기별 (차수)	회의일자	부의안건	심사결과
제194회 (제2차)	2011.06.21	○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 (계속)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위원회안)	원안가결
		○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철 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제194회 (제3차)	2011.09.08	○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195회 (제1차)	2011.09.16	○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신현환 의원 외 14인 발의)	원안가결
제195회 (제2차)	2011.10.05	○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 신임 정무부시장 내정에 따른 인사간담회 기본계획 협의 건	수정가결
제195회 (제3차)	2011.10.14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 건	수정가결
제196회 (제1차)	2011.11.08	○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197회 (제1차)	2011.11.30	○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수정가결
		○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보고	/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97회 (제2차)	2012.01.19	○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198회 (제1차)	2012.01.30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
제198회 (제2차)	2012.03.06	○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회기별 (차수)	회의일자	부의안건	심사결과
제199회 (제1차)	2012.04.17	○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200회 (제1차)	2012.04.23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제200회 (제2차)	2012.05.10	○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 의회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제201회 (제1차)	2012.06.05	○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원안가결
제202회 (제1차)	2012.06.13	○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원안가결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202회 (제2차)	2012.07.06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 LH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철 의원 발의)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협의 건(위원회안)	원안가결
		○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위원회안)	원안가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원안가결

회기별 (차수)	회의일자	부의안건	심사결과
제202회 (제3차)	2012.08.30	○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203회 (제1차)	2012.09.03	○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 규정 보고의 건	/
제203회 (제2차)	2012.10.16	○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제204회 (제1차)	2012.10.29	○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205회 (제1차)	2012.11.29	○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원안가결
		○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201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 사실확인의 건 (위원회안)	원안가결

회기별 (차수)	회의일자	부의안건	심사결과
제205회 (제2차)	2012.12.13	○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 사실확인 결과에 대한 협의건	/
제205회 (제3차)	2013.01.15	○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
제206회 (제1차)	2013.01.21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안 보고	/
제206회 (제2차)	2013.03.05	○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 건	원안가결
제207회 (제1차)	2013.04.16	○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208회 (제1차)	2013.04.22	○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재상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현환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회기별 (차수)	회의일자	부의안건	심사결과
제209회 (제1차)	2013.06.11	○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결산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용덕 의원 외 8인 발의)	보 류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 의원 외 9인 발의)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재용의원 외 9인 발의)	수정가결
제209회 (제2차)	2013.08.21	○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건	원안가결
제210회 (제1차)	2013.08.30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용덕 의원 외 8인 발의)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용오 의원 외 7인 발의)	수정가결
		○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수영의원 외 14인 발의)	수정가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원안가결
제210회 (제2차)	2013.09.23	○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211회 (제1차)	2013.09.30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	/
제211회 (제2차)	2013.11.05	○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원안가결
제212회 (제1차)	2013.11.27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동수 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위원회안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201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원안가결

회기별 (차수)	회의일자	부의안건	심사결과
제212회 (제2차)	2014.01.27	○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213회 (제1차)	2014.02.06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
제213회 (제2차)	2014.03.04	○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214회 (제1차)	2014.04.11	○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 건	원안가결
제215회 (제1차)	2014.05.02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원안가결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Ⅲ.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 분	대상기관	감사일자	장 소	감사결과 (지적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2010.11.17	운영위원회의실	총 8건 (처리요구 8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2011.11.16	운영위원회의실	총 9 건 (처리요구 9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2012.11.09	운영위원회의실	총 11 건 (처리요구 8건/건의 3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2013.11.13	운영위원회의실	총 8건 (처리요구 6건/건의 2건)

IV.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특별위원회명	활동기간	구성위원	활동내용 (추진사항)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10.10.19 ~ ‘12.6.18 (20개월)	10명 · 위 원 장 1 (이한구 의원) · 간 사 2 · 위 원 7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및 조례 제정 - 회 의 : 10회, 간담회 : 13회 - 현지시찰 : 4회, 공청회 : 1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10.10.29 ~ ‘11.10.28 (12개월)	9명 · 위 원 장 1 (이성만 의원) · 간 사 2 · 위 원 6	○ 재정위기 대응방안 마련(대안 제시) - 회 의 : 9회, 간담회 : 14회 - 현지시찰 : 1회, 공청회 : 2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10.12.16 ~ ‘11. 9.15 (9개월)	11명 · 위원장 1 (정수영 의원) · 간 사 2 · 위 원 8	○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 등 발굴·정비 - 회 의 : 5회, 간담회 : 2회 - 조례 개정 및 폐지 : 31건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10.12.23 ~ ‘11.12.22 (12개월)	11명 · 위 원 장 1 (이용범 의원) · 간 사 2 · 위 원 8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대회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 회 의 : 7회, 간담회 : 7회 - 현지시찰 : 2회, 국비확보활동 : 3회
월미은하레일 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11.07.06 ~ ‘12.05.31 (약10개월)	11명 · 위 원 장 1 (안병배 의원) · 간 사 2 · 위 원 8	○ 월미은하레일사업 추진 하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 회 의 : 9회 - 현지시찰 : 2회, 비교시찰 : 1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12.7.6~ ‘13.3.31 (약9개월)	9명 · 위 원 장 1 (김병철 의원) · 부위원장 2 · 위 원 6	○ LH공사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조사 및 사업정상화 촉구 - 회의 : 8회, 간담회 : 10회 - 현지확인 : 3회, 관계자간 업무협의 : 3회 - 기자회견 등 : 3회

특별위원회명	활동기간	구성위원	활동내용 (추진사항)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13.2.1 ~ ‘13.9.30 (8개월)	7명 · 위 원 장 1 (이한구 의원) · 부위원장 2 · 위 원 4	○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연계발전계획 마련 촉구 - 회의 : 4회 , 현장점검 : 1회 - 토론회 : 1회, 주민간담회 : 1회 - 실무협의회 : 3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13.10.11 ~ ‘14.3.10 (5개월)	13명 · 위 원 장 1 (정수영 의원) · 부위원장 2 · 위 원 10	○ 아파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주민공동체 사업 발굴과 지원 모색 등 - 회 의 : 5회, 간담회 : 9회 - 비교시찰 : 1회, 토론회 : 2회

부 록

【부 록 ①】

【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 】

구분	회기	회의일수					주요처리안건
		계	분회의	상임위	예결위	휴일	
계	7회	130일	27	55	8	40	
제 213 회 (임시 회)	2. 6(목) ~ 2.17(월)	12일	2	6	·	4	○ 시정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포함)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 214 회 (임시 회)	3.10(월) ~ 3.21(금)	12일	5	5	·	2	○ 시정질문(3.11~3.13)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 215 회 (임시 회)	4.18(금) ~ 5. 2(금)	15일	2	9	·	4	○ 주요예산사업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5월중) 위원 선임 ○ 제6대 의회 미료 안건 처리
제 216 회 (임시 회)	7. 1(화) ~ 7.14(월)	14일	4	6	·	4	○ 제7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개원식 ○ 시정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 ○ 기타 긴급 안건 처리
제 217 회 (제1차 정례회)	8.22(금) ~ 9.15(월)	25일	5	6	3	11	○ 시정질문(8.25~8.27) ○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정) ○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상임위원회별)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 218 회 (임시 회)	10.8(수) ~10.17(금)	10일	2	5	·	3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015년도 계속 및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포함)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본회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 219 회 (제2차 정례회)	11.11(화) ~12.22(월)	42일	7	18	5	12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11.12~11.25) 및 결과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포함) ○ 시정연설, 추경안 및 2015년도 예산안 ○ 시정질문(12.17~12.19) 및 추진상황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 | |
|-----------------------------------|-----------------------------------|
| ○ 설 연 휴 : 1.30. ~ 2. 2. | ○ 추 석 연 휴 : 9. 6. ~ 9.10. |
|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 5월중 | ○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 9.19 ~ 10. 4. |
| ○ 제43회 전국소년체전(인천) : 5.19. ~ 5.22. | ○ 제50회 시민의 날 : 10. 15. |
| ○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6. 4. | ○ 제11회 장애인아시안게임 : 10.18 ~ 10. 24. |
| ○ 제6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일 : 6.30. | ○ 제95회 전국체전(제주) : 10.21. ~ 10.27. |
| ○ 2013회계연도 결산서 제출시한 : 6.30까지 |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1.13. |
| ○ 제7대 의회 의원 임기개시일 : 7. 1. | ○ 2015예산안 제출시한 : 11.11까지 |
| ○ 을 지 연 습 : 8.18. ~ 8.21. | ○ 2015예산안 의결시한 : 12.16까지 |

【부 록 ②】

2014년도 운영전문위원실
주요 업무 보고

2014. 7.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보고순서

I. 기본현황

1. 운영전문위원실 소관사항
2.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및 담당업무 현황
3. 2014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실적
4. 2014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계획

II.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신뢰 받는 의회 구현
2.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3.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
4. 의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연구과제 발굴·추진
5.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6. 운영전문위원실 예·결산 업무 강화 (현안사항)

I. 기본 현황

1. 운영전문위원실 소관사항

소관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소 관 업 무
의회운영 위원회	11명 (미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의회 관련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3명 (미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및 결산안 심사
윤리특별 위원회	9명 (미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기 타 특별위원회	13명 이내 (미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개의 상임위 혹은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 심사

전문위원실 지원업무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안 검토 및 분석,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 제공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2.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및 담당업무 현황 (2014. 7. 1 현재)

직위(직급)	성명	사진	업무
수석전문위원 (별정4급)	임조순		○ 운영전문위원실 업무 총괄
전문위원 (행정5급)	전병호		○ 운영전문위원실 업무 관리 ○ 위원회 회의진행
행정6급	전창성		○ 예산·결산 종합분석 및 검토(시청) ○ 시나리오 작성(예결위) ○ 예결위원 요구자료 처리
행정6급	최정화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 시나리오 작성 (운영·윤리·특위) ○ 특별위원회 운영
행정7급	김태희		○ 예산·결산 종합분석 및 검토(교육청) ○ 검토·심사보고서 작성(시청·교육청) ○ 예결위원 요구자료 처리
행정7급	정종영		○ 운영위원회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업무 ○ 특별위원회 운영
사무운영6급	임세옥		○ 운영전문위원실 사무 ○ 운영전문위원실 예산 집행 ○ 운영(예결)위원회 회의실 관리
공무직	최민경		○ 운영위원장실 사무 보조
대체인력	이연화		○ 특별위원장실 사무 보조

3. 2014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실적

(단위 : 건)

연번	구분	계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규칙 규정 (안)	결의안 (건의안)	선거 선임	불합 행감
	계	7	0	0	1	1	1	0	4
1	제212회 2차 (2013.01.27)	1							1
2	제213회 1차 (2014.02.06)	1							1
3	제213회 2차 (2014.03.04)	1							1
4	제214회 1차 (2014.04.11)	1							1
5	제215회 1차 (2014.05.02)	3			1	1	1		

4. 2014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계획(안)

구분	회기	운영위	주요처리안건	비고
계	4 회	9 회		
제 216 회 (임시회)	7. 1(화) ~ 7.14(월)	1 차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특위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협의의 건	
		2 차	○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3 차	○ 제217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폐회중
제 217 회 (제1차 정례회)	8.22(금) ~ 9.15(월)	1 차	○ 2013회계연도 결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2 차	○ 제218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폐회중
제 218 회 (임시회)	10.8(수) ~10.17(금)	1 차	○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2 차	○ 제219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폐회중
제 219 회 (제2차 정례회)	11.11(화) ~12.22(월)	행 감	○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1 차	○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Ⅱ.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신뢰 받는 의회 구현
2.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3.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
4. 의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연구과제 발굴·추진
5.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6. 운영전문위원실 예·결산 업무 강화 (현안사항)

1.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신뢰 받는 의회 구현

◇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7대 의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추진

□ 위원회 개요

- 구 성 : 11명 (위원장 1, 부위원장 2 포함)
- 소 관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사일정 협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등
 -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의회사무처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 의회운영과 관련된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

- 소관 안전 자료 수집 및 검토 보고
- 위원회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개최 : 연 1회
-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수시
- 위원회 홍보활동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위원회 홈페이지 주기적 업데이트 및 콘텐츠 다양화
 - 간담회 개최,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2.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인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시의회의 위상 강화 도모

□ 협의회 개요

- 구 성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7명
- 기 능
 - 시·도의회 공동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
 - 시·도의회 상호간 정보 교환 및 주요 현안사항 협의
 - 협의회 회원 간의 친목 증진을 위한 사항
- 임 원 : 회장 1인, 부회장 4인,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 회 의 : 정기회 월 1회 / 임시회 필요시

□ 추진계획

- 정기회 참석 : 월 1회 (시·도의회별 순환 개최)
- 정기회 인천 개최 : '2014. 10월 (인천 AG과 연계 추진 예정)
- 지방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교환 : 수시
- 위원회 안건 작성·제출 : 현안사항 발생시

3.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

- ◇ 인천광역시 · 교육청 예산·결산안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심의를 위해 회계별 총괄 검토 및 주요사업별 심층 분석을 통한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지원코자 함.

□ 추진개요

○ 검토대상

-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
- 인천광역시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

○ 검토방법

- 회계별 세입 추계 및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총괄 분석
- 기금별 운용계획의 효율성 및 조성규모의 적정성 검토
- 중기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 주요 재정제도의 예산안 분석
-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 적정성 · 효과성 검증 및 중복 투자 등 예산낭비 여부 등

□ 추진계획

-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14. 8 ~ 9월
- 2014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 예산안 심사 : '14. 11 ~ 12월
-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경예산안 제출시 : 수시

4. 의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연구과제 발굴·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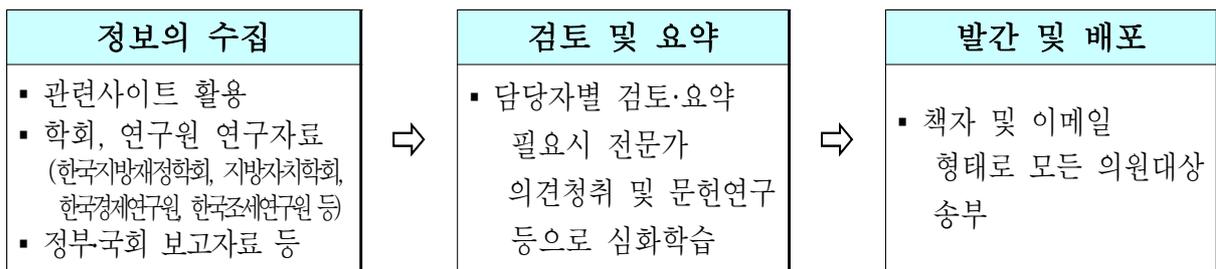
- ◇ 예산제도·재정정책 분야 연구동향 및 새로 도입하는 제도·법령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 ◇ 예산·재정 정책분야 주요 이슈들을 분석 및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예산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추진개요

○ 조사대상

- 예산제도·지방세제 등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
- 법령 제·개정사항, 지방세제 개편 방안 등

○ 발간절차



□ 추진계획

○ 월 1회 기준으로 지속 작성 및 발간하여 자료 제공

- 7대 의회부터는 해외 경제동향 등에 관한 자료들도 추가 발굴 및 게재

○ 연구과제별 토론회 개최 : 수시

- 운영전문위원실, 시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등 참여
-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과제로 관리

5.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 특정 안전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를 운영

□ 특별위원회 개요

○ 구 성

- 특정한 안전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구성
- 여러 개의 상임위 혹은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전 심사

○ 설 치 : 안전 발의 ⇒ 운영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및 확정

○ 위 원 : 의장이 추천 ⇒ 본회의 의결로 선임 (13인 이내)

○ 활동기간 : 한정된 기간에만 활동 (특위 구성결의안에서 명시)

※ 제6대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별첨」

□ 추진계획

○ 토론회, 간담회 개최 : 특별위원회별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

○ 현장방문, 비교시찰, 연찬회 개최 : 특별위원회별

-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주제·장소 선정

○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 : 수시

- 특별위원회별 홈페이지 운영
- 의회저널, 언론 보도자료, 인터뷰자료 등 제공

○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부 : 특별위원회 종료 후

6. 운영전문위원실 예·결산 업무 강화

《현안사항》

◇ 인천시 도시규모 확대 및 현안사항에 따른 예산 증가로 인하여
의회의 예·결산 업무 강화 요구

◇ 의회의 핵심적 권한인 예·결산 심의 및 의결권 강화를 위하여
운영전문위원실의 예·결산 업무 및 기능 조정 필요

※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운영전문위원실 인력 운영 실태

○ 운영·윤리·일반 특위·서무 업무 : 3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 2명

※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 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 등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추진계획

○ 1단계 : 운영전문위원실 예·결산업무 전담 실무자 배치 [완료]
-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업무 조정)

○ 2단계 : 운영전문위원실 「예결산심사팀」 분리
-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증원 요청 : 2014. 1. 16 시 및 교육청)

○ 3단계 : 「예결특위전문위원실」 신설

기대효과

○ 예·결산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로 예·결산 업무의 전문성 제고

○ 예산 재정 관련 이론 및 실무 기능 강화로 인천광역시 예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참고문헌]

1. 최민수(2010), 「지방의회 운영」. 서강출판사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13), 「제19대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편람」. 주식회사 싱크온
3. 안전행정부(2012),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 제일기획

제 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매뉴얼북

발행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전화번호 032)440-6205

발행년월일 2014년 7월 일

인쇄 시민봉사과 문서발간실

필자의 허락 없이 본책자를 복제하거나
전재하는 것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